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93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권성동

조은희 · 김기웅 · 이달희

이상휘 · 서일준 · 김선교

신동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으로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2025년 말 동 제도의 일몰 예정으로 조합법인의 지속적인 공익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최근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일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 합에 대한 특별한 세제지원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정부의 직접 지출보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세 특례가 폐지될 경우 조합원의 복리 향상 및 지

역 사회의 소득 열위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생겨 농림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이익 실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큼.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혅 했 아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 ----2028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 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 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 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 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 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 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 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 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